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9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13. ~ 3.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장보금(☎2133-668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설치 및 기능)”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미리”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시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u> <u>고</u> <u>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u> <u>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u> <u>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u> <u>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u> <u>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u> <u>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u>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u>구성한다.</u></p>	<p>제1조(목적) ----- --- <u>규제정책</u>----- ----- ----- ----- <u>제3</u> <u>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u> <u>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u> <u>한</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 법」 제2조를 따른다.</p> <p>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 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p> <p>제4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성) ①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p>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
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
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
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
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
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
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
· 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

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
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
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제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자격기준, 업무범위, 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자격요건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참고 하여 인건비는 3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 3급(상당)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천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25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 비용은 2025년 7월부터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지출	○ 규제총괄관 수당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	-	-	-	-	-
	소계(a)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수입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 수당은 3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110,826)을 시간당 수당(52,474원*)으로 환산하여 추계
 * 52,474원 = 110,826천원/2,112시간(주 40시간 × 4.4주 × 12개월)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0,150	40,300	40,300	40,300	40,300	181,35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무행정팀장 박정아
 담 당 자 장보금(02-2133-6684, goguma@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규제총괄관 총 비용(합계) ≙ 181,350천원(연평균 36,27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5~2029) 비용의 합산
 - : 40,300천원* × 4년('26.~'29) + 20,150천원('25.7.~12.)
 - ≙ 161,200천원 + 20,150천원 ≙ 181,350천원

* 연간 규제총괄관 수당

= 3급 공무원 최대연봉액의 시간급 환산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기간
 = 52,474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0,300천원